

숙박 약관

제 1 조(적용 범위)

1. 당 호텔·여관이 숙박 손님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되는 계약은 이 약관이 결정하는 것에 의한 것으로 하고,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.
2. 당 호텔·여관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
제 2 조(숙박 계약의 신청)

1. 당 호텔·여관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·여관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.
 - (1) 숙박자명 및 그 연락처
 - (2) 숙박일 및 도착 예정시각
 - (3) 숙박 요금(원칙적으로 별표 제 1 의 기본숙박료에 따른다.)
 - (4) 신청자명 및 그 연락처
 - (5) 기타 당 호텔·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숙박 손님이 숙박 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일을 넘어서 숙박 연장을 제의한 경우, 당 호텔·여관은 그 제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이 신청된 것으로 처리합니다.

제 3 조(숙박 계약의 성립 등)

1. 숙박 계약은 당 호텔·여관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당 호텔·여관이 승낙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2.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(3 일을 넘을 때는 3 일간)의 기본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·여관이 정한 신청액을 당 호텔·여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.
3. 신청액은 우선 숙박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으로 총당하고,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총당하며,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.
4. 제 2 항의 신청액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·여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는 숙박 계약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신청액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·여관이 그 취지를 숙박 손님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한합니다.

제 4 조(신청액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)

1. 전조 제 2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 호텔·여관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액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
2.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있어서 당 호텔·여관이 전조 제 2 항의 신청액의 지불을 요구하지

않았을 경우 및 당해 신청액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따르는 것으로서 취급합니다.

제 5 조(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)

1. 당 호텔·여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- (1)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
 - (2)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
 - (3)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
 - (4)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과거에 당 호텔에 대금 지불의 지연 등을 한 일이 있음이 인정되었을 때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a 내지 c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
 - a 폭력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(1991년 법률 제 77호) 제 2조 제 2호에 규정된 폭력조직(이하 '폭력조직'이라 함), 동조 제 2조 제 6호에 규정된 폭력조직원(이하 '폭력조직원'이라 함), 폭력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조직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
 - b 폭력조직 또는 폭력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
 - c 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 - (5)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 손님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
 - (6)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
 - (7) 숙박하고자 하는 자의 불안정한 심신의 상태가 분명히 인정될 때
 - (8)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친권자의 서면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뿐일 때
 - (9)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 손님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
 - (10) 숙박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숙박 신청을 했다고 당 호텔·여관이 판단할 때
 - (11)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
 - (12) 천재지변, 시설의 고장,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
 - (13) 당 호텔·여관이 소재하는 도도부현 조례의 규정에 해당할 때

제 6 조(숙박 손님의 계약해제권)

1. 숙박 손님은 당 호텔·여관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2. 당 호텔·여관은 숙박 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(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·여관이 신청액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서 그 지불을 요구했을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.)는 별표 제 2에 열거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신청하여 받습니다. 단, 당 호텔·여관이 제 4조 제 1항의 특약에 응했을 경우는 그 특약에 응할 시, 숙박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·여관이 숙박 손님에게 통지했을 때에 한합니다.
3. 당 호텔·여관은 숙박 손님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(미리 도착 예정시각이

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2 시간 지난 시각)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 손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

제 7 조(당 호텔·여관의 계약해제권)

1. 당 호텔·여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.
 - (1) 숙박 손님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
 - (2) 숙박 손님이 다음의 a 내지 c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
 - a 폭력조직, 폭력조직원, 폭력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조직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
 - b 폭력조직 또는 폭력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
 - c 임원 가운데 폭력조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 - (3) 숙박 손님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
 - (4)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이 요구됐을 때
 - (5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
 - (6)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 손님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, 및 다른 숙박 손님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
 - (7) 침실에서의 자기 전 담배 피우기(가열식 담배 포함),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못된 장난, 기타 당 호텔·여관이 정하는 이용 규칙(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.)에 따르지 않을 때.
 - (8) 당 호텔·여관이 소재하는 도도부현 조례의 규정에 해당할 때
2. 당 호텔·여관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 손님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
제 8 조(숙박 등록)

1. 숙박 손님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·여관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.
 - (1) 숙박 손님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, 연락처 및 직업
 - (2) 일본 국내에 주소 등록지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, 여권번호, 입국지 및 입국연월일 (확인 절차상 여권을 복사합니다.)
 - (3) 출발일 및 출발 예정시각
 - (4) 기타 당 호텔·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숙박 손님이 제 12 조의 요금 지불을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.

제 9 조(객실의 사용 시간)

1. 숙박 손님이 당 호텔·여관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관내의 시설 및 서비스 안내를 참조하십시오. 단,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2. 당 호텔·여관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동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사용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신청해 받습니다.

제 10 조(이용 규칙의 준수)

숙박 손님은 당 호텔·여관 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·여관이 정해서 당 호텔·여관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.

제 11 조(영업시간)

1. 당 호텔·여관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비치된 팸플릿류, 각처에 게시된 안내문, 관내의 시설 및 서비스 안내 등을 참조하십시오.
2.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.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

제 12 조(요금의 지불)

1. 숙박 손님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 1 에 열거하는 바에 따릅니다.
2.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일본의 통화 또는 당 호텔·여관이 인정한 숙박권, 신용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 손님의 도착 시 또는 당 호텔·여관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.
3. 당 호텔·여관이 숙박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됐는데 숙박 손님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신청해 받습니다.

제 13 조(당 호텔·여관의 책임)

1. 당 호텔·여관은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되는 계약의 이행 시 또는 그것들의 불이행에 의해 숙박 손님에게 손해를 주게 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그것이 당 호텔·여관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2. 당 호텔·여관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도록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
제 14 조(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)

1. 당 호텔·여관은 숙박 손님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 손님의 양해를 얻고 할 수 있는 한 같은 조건으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 하는 것으로 합니다.
2. 당 호텔·여관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수의 보상료를 숙박 손님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총당합니다. 단,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당 호텔·여관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.

제 15 조(기탁물 등의 취급)

1. 숙박 손님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또는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일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·여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·여관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했을 경우에 숙박 손님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·여관은 10 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2. 숙박 손님이 당 호텔·여관 내에 가지고 들어온 물품 또는 현금 또는 귀중품은 프런트에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 호텔·여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·여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숙박 손님에게서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·여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10 만엔을 한도로서 당 호텔·여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제 16 조(숙박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)

1. 숙박 손님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·여관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·여관이 허락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, 숙박 손님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줍니다.
2. 숙박 손님이 체크아웃하고 나서 숙박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·여관에 잇고 두고 갔을 경우에 당 호텔·여관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의 문의 연락을 기다렸다가 그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.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, 귀중품은 발견한 날을 포함하여 최장 7 일간 보관하고,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며,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3 개월 경과 후 처분합니다. 단, 음식물, 담배, 잡지 등에 대해서는 당일 즉시 처분합니다.
3. 전 2 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·여관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며, 전항은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.
4. 당 호텔·여관은 당 호텔·여관에 잇고 두고 간 수화물 또는 휴대품에 대해서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므로, 그 내용물을 당 호텔·여관의 판단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전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, 숙박 손님은 이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.

제 17 조(주차의 책임)

숙박손님이 당 호텔·여관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하에 불구하고 당 호텔·여관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지 않습니다. 단,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·여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것을 배상합니다. 또한, 당 호텔·여관의 제휴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휴 주차장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.

제 18 조(숙박 손님의 책임)

숙박 손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·여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해 숙박 손님은 당 호텔·여관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.

제 19 조(면책사항)

당 호텔·여관 내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할 시는 이용자 자신의 책임하에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. 컴퓨터 통신 이용 중에 시스템 장애 기타 다른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이용자가 손해를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라 해도 당 호텔·여관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당 호텔·여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 호텔·여관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
제 20 조(지배적인 언어)

본 약관은 일본어 및 영어, 중국어, 한국어로 작성되지만, 약관의 각 언어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어 문장이 모든 점에 있어서 지배적인 것으로 합니다.

제 21 조(숙박 약관의 개정)

이 숙박 약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. 이 약관이 개정된 경우 당 호텔·여관은 개정 후의 약관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당 호텔·여관의 웹사이트 또는 당 호텔·여관 내에 게시하는 것으로 합니다.

별표 제 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(제 2 조 제 1 항 및 제 12 조 제 1 항 관계)

		내역
숙박 손님이 지불해야 할 총액	숙박요금	호텔(JR 호텔 야쿠시마 제외): 기본숙박료(객실요금) JR 호텔 야쿠시마, 여관(하나벳푸): 기본숙박료(객실요금+식사 등의 대금)
	추가요금	기타 이용료
	세금	소비세 등 법령 및 조례로 규정되는 모든 세금

【비고】

기본숙박료는 팸플릿에 게시한 요금표에 따릅니다.

별표 제 2 위약금 (제 6 조 제 2 항 관계)

【호텔 (JR 호텔 야쿠시마 제외)】

계약해제 통지를 받은 날	불박	당일	전일	3~2 일 전	7~4 일 전	20~8 일 전
계약신청 객실 수						
7 일까지	100%	80%	50%	20%	—	—
8 일 이상	100%	80%	80%	50%	30%	20%

【JR 호텔 야쿠시마, 여관(하나벳푸)】

계약해제 통지를 받은 날	불박	당일	전일	3~2 일 전	7~4 일 전	20~8 일 전
계약 신청인 수						
14 명까지	100%	100%	80%	50%	20%	—
15 명 이상	100%	100%	80%	50%	30%	20%

【공통비고】

1. %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2.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1 일분(첫날)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.
3. 호텔(JR 호텔 야쿠시마 제외)는 계약신청 객실 수 8 일 이상, JR 호텔 야쿠시마와 여관(하나벳푸)는 계약신청 인원 15 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 해제가 있었을 경우, 숙박 8 일 전(그날보다 뒤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)의 숙박 인원의 10%(우수리가 나온 경우는 절상)에 해당하는 인원 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.